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83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조정식・황운하・박성준

김회재・유동수・송갑석

정일영 · 임호선 · 김윤덕

윤영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자로서,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하역·보관·통관 등 일체의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공급망의 핵심주체임.

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류의 핵심정보인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보세창고를 배정하는 등의 물류 지배력을 이용하여 밀수출 입 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 제도권 내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 요함.

반면에,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송화물의 폭발적인 수출증가로 적하목록 제출자인 선사 및 항공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지연 제출 우려가 있어, 특송화물이 선박 및 항공기에 적기에 적재되어 해외로 반출될 수 있도록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 확대 등의 적극적

인 수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개정안은 적하목록 자료 보관자에 적하목록 작성자를 추가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요청을 받아 실제 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경우에는 처벌하는 한편,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격을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물류지체를 최소화하여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등의 관세행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제136조, 제222조, 제224조, 제277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로, "제출한 날부터"를 "작성·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1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2조제3항 전단 중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을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으로 한다.

제2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관세청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27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 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 자는 신고 또는 작성・제출한 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 ----작성·제출한 날부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6조(출항절차) ①・② (생 제136조(출항절차)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소 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물품 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 ----. 다만, 제22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 신설> 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④·⑤ (생 략)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 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 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 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
	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u>있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	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3
	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
	<u>의 인적사항 등</u>
제	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
''	제재) 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 ② ~ ③ (생 략)
- 제27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신 설>

⑤ · ⑥ (생략)

 	-	 	_	_	-	_	_	_	_	_	_	-	_	-	_	-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안 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관세청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 4 ---------
- 1. ~ 6. (현행과 같음)
-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 ⑤·⑥ (현행과 같음)